

2016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소집통보일자	2017. 1. 16
위원정수 : 9명	재적위원 : 9명

1. 일 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1시

2. 장 소 : DIT 본관 2층 소회의실

3. 참석위원 : 8 명(위원장 : 서영호)

위 원 : 김석철, 신창욱, 강혁준, 전선배, 윤지광, 조재식, 이성률)

4. 불참위원 : 1 명(위 원 : 윤지환)

5. 참석교직원 : 1명(정보전산부 이학준 부장)

6. 안 건

제1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2호 의안)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제3호 의안) 2017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심의

제4호 의안)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안) 심의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회의록 간서명 추천

7. 회의내용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
<간서명>	서영호	김석철	조재식

가. 개회

- 서영호 위원장이 9명 중의 재적위원 중 8명 참석으로 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고, 2016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제1호 의안)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안)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 차기이월자금 규모
 - ◎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 제외)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 ◎ 기타적립기금 적립목적 용도 변경
- 신창욱 의원이 기타적립기금의 용도 배경의 원인을 질의하다.
- 기획부 조정우 간사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개정(‘16.12.27)에 따라 기타적립 기금의 적립목적을 명확히 하고자 기타적립기금 14억원을 인출하여 건축적립기금 10억원, 퇴직적립기금 4억원으로 각각 적립할 계획임을 설명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위원회의 동의로 2016 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 8명, 반대 : 0명)

제2호 의안)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안)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안)과 주요사항을 설명하다.
 - ◎ 차기이월자금 규모
 - ◎ 등록금 수입(단기수강료 제외) 대비 장학금 지급 비율
 - ◎ 대학체제에 맞는 예산 사업 편성분류체제 개편
 - ◎ 대학 홈페이지 서버 구축 최신화 사업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
	서영호	김석철	조재식

- 강혁준 의원이 대학 홈페이지 서버 구축 최신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다.
- 정보전산부 이학준 부장이 학과 홈페이지의 반응형 웹디자인 개편작업, Active X 폐기, 그룹웨어의 리뉴얼 등 3개 주요사업이며, 2017 회계연도에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IT 환경정책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음을 설명하다.
-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서영호 의장이 안건에 동의를 구하다.
- 서영호 위원장이 전위원회의 동의로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찬성 : 8명, 반대 : 0명)

제3호 의안) 2017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

- 기획부 조정우 간사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대하여 설명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2017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968,000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 예정액 50,000천원을 제외한 918,000천원을 학교부담신청금액으로 요청하다.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위원회의 동의로 2017 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심의가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 8명, 반대 : 0명)

제4호 의안)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심의

- 기획부 조정우 부장이 2017 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잉여금 처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
	서영호	김석철	조재식

리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다.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
- 교비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

- ①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의 최소화에 노력함
- ② 이월금 중 구체적인 예산절감, 사업취소, 불용액 등의 교비회계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중 장학금,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 순으로 우선 편성함

- 이성을 의원이 차기 등록금심의회의부터는 잉여금 발생 시 처리관련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다.
- 별 다른 질의가 없어 서영호 위원장이 전 위원 동의하에 잉여금 처리 원칙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하다. (찬성: 8, 반대: 0)

제5호 의안)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추천

- 서영호 위원장이 사립학교법 제18조2 제2항에 의거한 간서명 대표위원을 추천받다.
- 전선배 위원이 간서명 대표위원으로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을 추천하다.
- 전 위원이 간서명에 대하여 동의하다. (찬성:8, 반대:0)
- 서영호 위원장이 2016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의 간서명을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이 서명함을 선언하다.

다. 폐회

- 서영호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간서명>	서영호 위원장	김석철 위원	조재식 위원
	서영호	김석철	조재식

위 사실을 확인함.

2017. 1. 23

위 원 장 : 서 영 호 *(인)*
위 원 : 김 석 철 (인) *(인)*
위 원 : 신 창 육 (인) *(인)*
위 원 : 전 선 배 (인) *(인)*
위 원 : 이 성 율 (인) *(인)*
위 원 : 윤 지 광 (인) *(인)*
위 원 : 조 재 식 (인) *(인)*

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17. 1. 23.

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동의과학대학교 총장



이사관은 위문과 상의 없음을 증명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김